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 과 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

(이하 ‘보호자’ 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를 확인한다.

단. 대상자가 이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기관장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 급여 계약서(이하

계약서 라함)를 2부 작성하고 날인 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 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서의 내용(급여의 범위, 서비스제공 사항,

계약자의 의무, 계약의해지, 재계약, 개인정보 보호의무,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계약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이 체결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 5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전에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하고 모든 사항을 개인파일에 편철 관리 한다.

제3조(계약서류)

어르신의 보호자와 계약을 할 때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입소 이용 신청서 1부
4.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1부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신체구속에 관한 설명서 동의서
6.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만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8. 계약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입소어르신의 권리)

입소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호 받는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본원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케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 할 권리가 있다.

8. 본원에서 생활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6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

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②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7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8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9조(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 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 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센터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위의 1~4항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은 보호자에게 청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을 아래의 6항에 명시하여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6.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중 추가로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가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어르신의 만성질환 또는 응급질환으로 의료센터의 진료, 검사, 투약 등의 발생 시 보호자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본원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진행한 경우에는 발생한
실비용에 대하여 추후 청구한다. 단, 대항비용을 따로 청구하지는 않는다.
- ② 어르신의 개인적인 기호, 요구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적인 물품, 간식류,
건강보조 용품, 영양제류 등의 구입을 대항한 경우 발생한 실비용에 대하여 추후 청구한다.
- ③ 어르신의 입소 기간 중 전염성질환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건강검진으로 발생한 실비용에 대하여 추후 청구한다.

제10조(시설물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①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입소자가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①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 등은 시설 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② 시설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 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